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가단2268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소외 B과 피고가 2022. 11. 12. 금214,090,580원에 관하여 맺은 증여계약을 143,741,3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3,74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책임재산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는 피고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될 것이나, 피고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피고는 부인하는 것뿐이고 법률상 ‘항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것은 없다.

피고는,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가 2022. 11. 12. 현금 2억 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같은 날 엄마 B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고 난 후에 B으로부터 일부 돈인 약 6,571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도 한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위 인정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피고의 반증이 없다. 변론종결일 후에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그래서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외 B과 피고가 2022. 11. 12. 금214,090,580원에 관하여 맺은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바, 변론종결일 현재 피보전채권 액수의 한도 내에서, 즉 143,741,3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143,74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석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이하 '채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A은 채납자의 자녀입니다.

나. 채납자의 국세부과 경위 및 채납내역

채납자는 「세종시 C 외 1필지」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19. 4. 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원고 산하 세종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107,470,410원을 2019. 11. 16.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143,741,340원의 국세가 채납되어 있습니다.

<표1> 소제기일 현재 소외 B의 국세채납내역 (원)

순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	채납액
1	양도소득세	2019년	2019. 11. 16.	2019. 4. 30.	107,470,410	143,741,340
합계					107,470,410	143,741,340

다. 채납자의 현금 증여 경위

1) 채납자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으며, 소외 D는 채납자의 장남으로 채납자가 수령한 양도대금 중 448,000,000원 상당을 본인 명의 계좌 또는 배우자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2) 채납자는 소외 D가 이체한 금원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21머150014 부당이득금 반환 조정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 4. 2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채납자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소외 D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상에 기재된 금원을 2022. 11. 10. 채납자의 소송을 대리했던 소외 F 변호사에게 229,804,709원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외 F 변호사는 소외 D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채납자의 요청에 의해 2022. 11. 10. 피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714,129원을 이체하고, 2022. 11. 12. 2억원 상당액을 5만원권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4) 피고는 채납자의 소송대리인 소외 F로부터 2022. 11. 12. 수령한 현금을 채납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아래 <표2>와 같이 2022. 11. 14. 본인 명의 H은행 계좌에 50,000,000원, 2023. 1. 27. 본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000,000원 입금 후 사용·소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5) 피고가 금전을 무상으로 수취한 것으로 2022. 11. 10.부터 2022. 11. 12.까지 채납자로부터 229,804,709원을 현금중여 받은 것입니다.

<표2> 피고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원)

순번	거래일자	구분	금액	거래상대방	예금주	은행명
1	2022.11.10.	입금	15,714,129	F 변호사	A	G은행
2	2022.11.14.	입금	50,000,000	현금입금	A	H은행
3	2023.01.27.	입금	100,000,000	현금입금	A	G은행
입금총계			165,714,129			

2. 채권자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1) 대진지방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채납자가 소외 D로부터 수령할 강제조정결정상 금액 250,000,000원 중 근저당설정비용, 대출이자 등을 제외한 금액

1)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채납자와 피고 간 증여일자는 2022. 11. 12.입니다.

2)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위 <표1> 순번 1 기재 조세채권은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증여일(2022. 11. 12.)보다 이전인바²⁾, 당연히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나. 채납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1) 2022. 11. 12. 당시 채납자의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3>과 같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과 관련된 이 사건 조세채무(국세) 143,741,340원이 있었으며, 적극재산으로는 대전지방법원 부당이득금소송과 관련하여 소외 D로부터 수령할 214,090,580원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채납자는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습니다.

<표3> 사해행위(2022. 11. 12.) 당시 채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적극재산	소송채권	2022. 11. 12. 소외 F 변호사로부터 수령한 현금	214,090,580
소계(①)			214,090,580
소극재산	조세채무	조세채무(국세)	143,741,340
소계(②)			143,741,340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 (③=①-②)			70,349,240
사해행위(④)	현금	이 사건 현금증여액	214,090,580
채무초과(⑤=③-④)			△143,741,340

끝.

2) 의존명사 '바'는 띄워 쓰지만, 어미 '-니.바'는 붙인다. 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을 준수하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존명사인 경우의 예시: 우리가 나아갈 바는 이미 정해진바, 물러설 수 없다. 어미인 경우의 예시: 피고인의 죄책이 무기운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